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468호

정관코리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372호(2010. 10. 20)로 산업단지 계획승인 고시 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389호(2012. 10. 1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112호(2013. 3. 20)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677호(2013. 4. 17)로 산업단지 준공인가 공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285호(2013. 7. 31)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1260번지 일원의 정관코리일반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 경제산업본부 산업임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도면은 개재를 생략합니다. 2013. 12. 11. 부산광역시 장

I. 산업단지 개요(변경없음)

- 1. 관리기관(변경없음) : 부산광역시장 (사업시행자 : (주)코리노스 대표이사 오권석)

2. 소재지(변경없음)

Table with 3 columns: 구분, 소재지, 면적(m)

3. 조성목적(변경없음)

- 산업시설용지의 적기 공급
○ 지역기업 역외 이전 방지
○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4. 추진경위(변경없음)

- '10. 10. 20 : 산업단지계획승인 고시(부고 제2010-372호)
○ '11. 11. 16 : 관리기본계획 및 지형도면고시(부고 제2011-426호)
○ '12. 10. 17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부고 제2012-389호)
○ '13. 2. 27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부고 제2013-82호)
○ '13. 4. 17 : 정관코리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부공 제2013-677호)
○ '13. 7. 31 :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부고 제2013-285호)

5. 분양계획(변경없음)

Table with 4 columns: 구분, 총면적, 분양 가능 면적, 분양제한 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 분양가능면적 : 산업시설구역 31,699.3m
\* 분양제한면적 : 산업시설구역 27,672.5m + 공공시설구역(도로, 주차장, 구거, 전기공급설비) 10,984.0m + 녹지(녹지, 완충녹지) 13,625.5m

6. 입주계획(변경없음)

Table with 4 columns: 구분, 입주업체수, 면적, 산업시설

\* 입주업체수는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시설별 세부내용(변경)

- 1) 산업시설(59,371.8m) : 금속산업(27,672.5m 46.6%), 기타(31,699.3m 24.1%)
1) 산업시설(59,371.8m) : 금속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7,672.5m 46.6%), 기타(31,699.3m 24.1%)
\* 변경사유 : 주요유치업종 범위내에서의 유치업종 배치 계획 변경
2) 공공시설(10,984.0m) : 도로(9,259.9m 11.0%), 주차장(912.0m 1.1%), 구거(473.2m 0.6%), 전기공급설비(338.9m 0.4%)
3) 녹지시설(13,625.5m) : 녹지(1,007.8m 1.2%), 완충녹지(12,617.7m 15.0%)

7. 입지여건(변경없음)

Table with 4 columns: 시설명, 기반시설 현황, 확충계획, 시행기관

II.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관리기본계획 수립대상(변경없음)

정관코리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수립은 산업 시설구역울 그 대상으로 한다.

2. 관리기본 방향(변경없음)

- 가. 인근 산업단지와 지원 및 연계 가능한 첨단생산용도의 산업단지로 계획 관리
나. 합리적인 업종배치로 산업단지활성화 도모
다.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 전개 및 관리업무의 전문화로 효율성 제고

3. 산업용지 용도별 구역계획(변경없음)

Table with 4 columns: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나. 구역별 건축물 건축물의 범위(변경없음)

- 1) 산업시설구역(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

- 18호 규정에 의한 제조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 「산집법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 가목2)에 따른 사업의 시설
2) 공공시설구역(변경없음)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용 건축물과 관련시설
○ 「주차장법」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

- 3) 녹지구역(변경없음) : 산업단지의 미관, 공해저감에 필요한 시설
다. 용도별구역 평면도(변경없음) : 별첨 #1(계재생략)

4. 산업시설구역 업종별 배치계획(변경)

Table with 4 columns: 구분, 업체수, 면적, 비고

\* 업체수는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Table with 4 columns: 구분, 업체수, 면적, 비고

\* 업체수는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배치기준(변경)

- 업종별 구분 배치(한국표준산업분류)

Table with 2 columns: 대분류, 중분류

Table with 2 columns: 대분류, 중분류

\* 변경사유 :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주요유치업종 범위내 에서의 배치계획 변경

다.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도(변경) : 별첨 #2(계재생략)

5. 입주기준(변경없음)

- 가. 입주대상 업종(변경없음)
1) 산업시설구역(변경없음)
○ 업종별 배치계획상의 모든 업종을 입주대상으로 하며, 「산집법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 중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주변 업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종은 제한할 수 있으며,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약취·소음·진동·폐수·분진·중량·위험물·대기오염 등 공해배출 요인이 있는 업종은 입주불가
\* 실제 영위하는 업체가 공해배출요인이 있다면 관리기관은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나. 입주자격(변경없음)

- 1) 산업시설구역(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규정의 입주기업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산집법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 가목2)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자
\*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분양공고 시 입주자격 및 입주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입주 우선순위(변경없음)

- 1)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 제4항에 의거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자
2)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주요청을 받은 자
4) 부산지역내에서 공공사업시행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업체
5) 부산지역내 소재업체로서 정관코리일반산업단지로서 이전코자 하는 업체
6) 부산지역의 소재업체로서 정관코리일반산업단지로서 이전코자 하는 업체
7) 공장을 신설코자 하는 자
라. 입주절차(변경없음)
1) 당해 산업단지내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2)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대매 계약을 체결한다.

III. 사후관리계획(변경없음)

1. 분양용지관리(변경없음)

- 가.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등에 따라 관리한다.
나. 입주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전(나대지등)에 분

양용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공장설립완료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코자 할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라.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규정에 따른다.

마.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정 기간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을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바.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장 등의 건설 미착공, 준공 불가능 인정, 사업 미착수, 사업의 휴지(休止) 등이 있는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고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 관리기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생산, 수출, 가공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업체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변경없음)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본 산업단지 환경성 검토 협의내용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 및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3. 안전관리(변경없음)

가.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나.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방재계획과 관련하여 안전, 공해, 환경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입주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기반시설지원(변경없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5. 분할면적 기준(변경없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9조의2 제2항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분할기준 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한다.

6. 기타사항(변경없음)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3-1839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분할합병)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분할합병)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2. 11. 부산광역시 장

Table with 6 columns: 합병·종속,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수리일자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3-106호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부산광역시 장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입법정책적 목적이 상이한 “SOC 민간투자사업”과 “기업 투자유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민간투자촉진조례 시행규칙」상에 일괄 규정되어 있어 목적사업별로 규칙 제정 필요
○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 유치, 투자진흥기금 부분이 상호 일관성이 있으므로 하나의 규칙으로 제정하여 통합 운영

2. 주요내용

- 가. 현행 「민간투자촉진조례 시행규칙」중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투자 촉진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통합(제2~3장)
○ 민간투자촉진조례 시행규칙, 외국인투자촉진조례 시행규칙 폐지
나.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위원회 보완·강화(제22조)
○ 현 외국인투자촉진조례상 “외국인투자협의회”를 보완 확대 → 부산광역시 기업유치위원회(위원장 : 경제부시장)

다. 투자진흥기금 지원사항 추가(제4장)
○ 투자진흥기금 운영지침으로 규정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
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3. 8. 6)에 따른 국내복귀(U턴)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제2~3조, 제5조,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투자유치과장,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611-7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투자유치과(전화 : 051-888-2172, FAX : 051-888-2169, E-mail : tgioi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law/)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열린시정 → 행정정보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